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김호춘*

요 약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 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 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Reserch for West Sea Northern limit line(NLL) of legal personality

HoChun Kim*

ABSTRAC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divided the two Koreas whe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1953, July 27 but there was no regulation for the sea border. Since then, The North has constantly denied the legitimacy of the sea border, which has remained the inter-Korean maritime border. But the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virtual maritime demarcation line for the avoidance of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intain and manage the armistice system peacefully. Therefore we should strengthen the Korea's sovereignty over the NLL by tightening the effective control.

Key words : NLL(Northern Limit Line), Armistice Agreement, MDL(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erritory jurisdiction

접수일(2013년 10월 1일), 수정일(1차: 2013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2013년 10월 22일)

* 포항대학교 군사과

1. 서 론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은 서해상의 해상 경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NLL(Northern Limit Line: 이하 서해북방한계선으로 칭함)을 설정하였다. 서해북방한계선은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남북한의 해상경계선이었다.

1953년 7월 27일에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지 않아 입법적 흠결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북방한계선은 남북한 간의 적대행위 중지 및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유지시켜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1973년 12월 1일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道界線)을 연장시켜 서해 5도 주변수역에 대해 북한의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9년에는 남북한 간의 사실상 해상경계선 역할을 수행한 북방한계선을 무효화하고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99년 새로운 해상경계선의 후속 조치로써 2000년 3월 23일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적으로 공포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에 관한 보도를 통해 남한 측의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공격이라고 하면서 서해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에도 근거 없는 비법적인 유령선이라고 하였으며 [1]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등의 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남북한 간의 긴장감과 분쟁을 조성해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으로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즉 북한은 이러한 해상경계선은 무효이므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나열된 등거리선 원칙, 형평의 원칙, 당사국간 합의, 자연연장의 원칙 등에 따라 새로이 해양경계선을 획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하

고 있다. [2]

그러나 서해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서해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고 이남 해역은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관할 수역이다.

또한 서해북방한계선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획선 되기 전까지는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는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부속합의서’ 제10조 규정에 의거 현재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관할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서해북방한계선을 불법한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국내학자들의 문헌 및 논문 자료를 근거 하여 서해북방한계선에 관한 법적성격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서해북방한계선의 설정배경 및 법적근거

2.1. 서해북방한계선의 개념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의 체결 발효로 무력행위가 정지되자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에서의 병력 철수 등 정전협정 내용의 이행과 해상경비임무를 위한 실질적 필요에 의해 [3] 1950년 8월 30일 서해 5도로부터 3해리 북단을 북방한계선으로 설정하였다. 이런 사실을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통고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다. [4]

북방한계선은 예성강 하구로부터 북한의 봉화리와 한국의 교동도와의 중간, 북한의 함박도와 우도의 중간을 거쳐 연평도 북쪽의 미력리도 중간 사이를 거쳐 한국의 대청도와 북한의 비업도, 마합도 사이로 거쳐 중간선으로 그 경계선이 획선 되어 있다.

즉 서해북방한계선은 한강(漢江) 하구(河口)로부터 서북쪽으로 다음의 점을 연결한 선이다.

① 37° 42' 45"N, 126° 06' 40"E ② 37° 39' 30" N, 126° 01' 00"E

③ 37° 42' 53"N, 126° 45' 00"E ④ 37° 41' 30"

N, 125° 41' 42"E

⑤ 37° 41' 25"N, 125° 40' 00"E ⑥ 37° 40' 55" N, 125° 31' 00"E

⑦ 37° 35' 00"N, 125° 14' 40"E ⑧ 37° 38' 15" N, 125° 02' 50"E

⑨ 37° 46' 00"N, 124° 52' 00"E ⑩ 38° 00' 00" N, 124° 51' 00"E ⑪ 38° 03' 00"N, 124° 38' 00"E이다. 이 선은 물론 휴전협정 규정에는 없으며 1953년 8월 이후 한국군과 주한 미 해군의 작전명령서 상에만 명시된 선이었다. [5]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부터 1973년 10월까지 북한의 공식 이의 없이 남

북도서간의 해상계선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6]

동해 북방한계선은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지점(북위 38도 36분 6초)에서 같은 위도의 동쪽 방향으로 군사분계선을 연장한 선을 말한다.

동해 북방한계선은 처음에는 북방경계선(NBL: Northern Boundary Line)이라는 이름하에 설치되었지만 유엔군 사령부는 1996년 7월 1일 북방경계선 개념을 폐지하고 서해와 같이 북방한계선으로 명기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동서해의 해상경계선 명칭이 북방한계선으로 통일되었다. [7]



(그림 1) 서해북방한계선과 북측 주장 서해 해상군사분계선(1999년)

2.2 서해북방한계선의 설정배경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시 육상의 군사분계선(MDL: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은 정전성립시점의 지상접촉선 (The Line Of Contact)중심

으로 155마일로 그 경계선이 확정되었다.

즉 정전협정 제2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지상의 군사분계선에 설치에 관하여 1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1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 한다”라

고 규정하고 또한 동 2항에 의하면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첨부지도에는 육상에만 군사분계선이 표시되어 있다. [8]

그러나 정전협정에는 해상경계선에 관한 규정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해상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는 정전협정 제2조13항ㄴ목과 제2조 15항만 있을 뿐이다.

즉 서해의 경우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道界線)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들을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는 규정(제 2조 13항ㄴ목)과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에 의해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제 2조 15항)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9]

해상경계선에 대해 상호간 합의점을 보지 못한 것은 유엔군과 공산군과의 해상관할구역에 대한 첨예한 이견(異見)대립 때문이었다.

즉 유엔군은 그 당시의 국제 관행이었던 해양법 규정을 명확히 준수하자는 취지에 따라 3해리 영해를 주장하였지만 공산군 측은 해상봉쇄 우려와 해상 기동 공간 확보를 위해 육상분계선을 중심으로 영해 12해리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쌍방 간에 해상군사분계선 획정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정전협정의 조문상의 입법적 흠결로 남아있다.

정전협정은 성립되었지만 쌍방 간의 해상경계선 미 설정으로 해상에서 간헐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하자 유엔군 측은 국군병력의 대북접근을 막기 위한 군사활동의 외측(북방)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유엔군 사령관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및 국군병력의 북한 월선(越線)을 방지하고 공산군 병력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설정기준은 동해상에서는 육상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북방경계선(NBL: Northern Boundary Line) 그

리고 서해에서는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획정하였다.

2.3. 서해북방한계선의 설정근거

2.3.1. 정전협정(제2조 13항 ㄴ목)

정전협정 제 2조 13항 ㄴ목의 규정에 따르면 본 정전협정은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안도서 및 해면(Coastal Island and Waters)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 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 연안도서의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한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통제 하에 남겨두고 그를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도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

따라서 정전협정 규정에는 서해북방한계선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서해북방한계선은 1953년 이후부터 남북한 간의 사실상 해상경계선 역할과 또한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 방지 등의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수행하여 왔다.

2.3.2. 남북기본합의서(제11조) 및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제10조)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에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어 1992년 발효되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및 남북의 교류와 협력 등 남북 관계 개선의 3개 중요

분야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하고 해당 분야 분과 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를 채택, 발표시킴으로써 구체적인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제11조)에 의하면 “남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7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제10조)에 의하면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 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호협약이 있기 전까지는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준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부속합의서 제10조에 의하여 해상경계선의 교섭 가능성을 열어 놓았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해북방한계선을 남북한 간의 사실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서해북방한계선의 법적성격

3.1.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통제선

서해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설정된 것 이기는 하지만 쌍방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피하고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통제선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전협정에 있어 적대행위를 하는 쌍방의 군사력 접촉선에 관한 합의를 군사분계선 또는 중립지대 설정의 합의라고 한다. 군사력의 접촉선의 합의는 적대행위를 정지 또는 종식시킨다는 휴전의사의 논리적인 전제를 구성하고 있다.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ㄴ목 규정에 의하면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도서군 들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군 지원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전협정 2조 13항에는 ‘영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군사통제(Under Military Control)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북방으로의 초계활동(Patrol)제한선 혹은 대북 근접활동의 한계선인 셈이다. [10]

또한 정전협정 제2조 15항 규정에 의하면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방한계선은 전시에 교전국의 해군력(군함 또는 기타 수단)으로써 모든 선박에 대해 당해 선박이 선적한 화물의 국적 및 형태를 불문하고 적의 항구 또는 해안선과 외부를 교통 및 출입하는 봉쇄선(Blockade Line)이 아니다.

봉쇄는 이를 침파하는 중립선박도 나포하여 몰수할 수 있는데 비해 북방한계선은 그것을 넘어 해주항에 드나드는 제3국의 선박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해북방한계선은 비록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지만 남북한 군사력의 직접적 충돌을 막고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선이었다.

3.2. 쌍방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

유엔사령부가 설정한 서해북방한계선은 쌍방 간의 관할 경계선인 것이며 국경선이 아닌 것이다. 즉 서해 북방한계선은 섬을 기초로 하여 인접수역 존중과 또한 이 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그 이남의 도서는 유엔사령부의 관할 하에 두었으며 그 이북의 도서는 북한 측의 관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방한계선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보존수역 등의 어업경계선이 아닌 것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은 소유를 내용으로 하는 영유권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실상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영역권(Imperium)의 경계선인 것이다. [11] 이는 남북 상호간에는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로 전제한 것이다.

한편 1953년부터 서해북방한계선상에서 남북한 해군간의 간헐적인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상호간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적대행위를 중식시켜온 사실상의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서해북방한계선이 설정된 후 북한 측에서 행동한 정황 등을 분석해 볼 때 서해북방한계선을 인지하고 준수한 증거자료가 다수 존재한다.

첫째, 1959년에 발간된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에서 서해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였으며 둘째, 1963년 5월 연평도 서방으로 침투한 간첩선 사건 발생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 월선(越線)을 부인하였으며 셋째,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를 백령도 및 연평도 서해북방한계선상에서 상봉 및 호송하였다는 점 넷째, 1998년 1월 한국비행정보구역(KADIZ)을 육상군사분계선과 서해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조정 시 북한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2002년 6월 서해북방한계선을 월선(越線)한 북한선박 1척을 서해북방한계선상에서 북한에게 인계 등은 실질적인 해상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서해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유엔군 사령부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을 합의할 때까지 현 서해북방한계선이 서해에서의 실효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점과 북한이 이 서해북방한계선을 월선(越線)하는 것은 도발로 간주할 것임을 북측에 전달하였다. [12]

3.3. 전쟁수역(War Zone)경계선

교전자는 전시에 '전쟁수역'(War Zone)을 선포하거나 적국의 항구와 연안을 봉쇄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대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간격은 우리의 영해 12해리로는 그 공백을 채울 수 없는 거리이므로 이 간격에 있어 북방한계선은 국제연합군 사령부가 설정한 전쟁수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 [13]

또한 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6월 15일과 17일 미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도 “ 우리는 북한이 북방한계선 이북에서 그들의 함정을 통제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1953년에는 동 수역이 전쟁수역이자 분쟁수역이었으며 영해관할권에 대하여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전쟁수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14]

이 밖에도 국가는 전시 및 평시를 불문하고 ‘방위수역’(Defence Zone)을 설정할 수 있다. 최근까지 약 30여개의 방위수역이 선정된바 있다. 러·일 전쟁 중 일본은 특정해역을 ‘방어해역’(Defence Sea Area)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4월 대통령령으로 방어해역을 선포하여 이 해역을 출입하는 항행을 통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독일은 1915년 2월 4일 영국의 주변 해역을 모든 선박을 무경고 격침시키는 ‘차단수역’으로 선언한 바 있다.

영국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11월 3일 북해 전역을 군사구역으로 선포했다. 이 밖에도 1939년 미국을 비롯한 21개 미주국가들이 설정한 300해리 방위수역이 있다.

위에서 방위수역, 차단수역, 군사수역, 작전수역 등 명칭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교전국들이 전쟁수역 설정권을 행사한 대표적인 선례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무력 적대행위가 정지되고 법적으로 정전이 성립되었지만 평화가 설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전자는 정전상태의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서 유엔군사령부가 설치한 서해북방한계선을 일종의 방위수역 또는 전쟁수역의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17]

3.4 소결론

정전협정은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하여 교전국 군사령관간의 체결하는 협정이다. 한국 정전협정은 휴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정전협정 발효로 한반도 전 영역에서 육군 및 해군, 공군의 전력 이 일제히 적대행위가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서해 북방한계선은 비록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지만 정전협정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후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국내학자들은 서해북방한계선의 그 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국제관습법 이론을 원용한다. 즉 북한은

서해북방계선을 사실상 해상경계선으로 묵시적 합의를 통하여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침예한 군사적 대결과 긴장감 속에서 북한이 수년 동안 묵인하였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북한은 1973년 10월과 11월 중에 북한 경비정들이 의도적으로 43회에 걸쳐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남한 측 수역을 갑자기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 주관적 요소로서 법적확신과 객관적 요건으로 일관적 관행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일반적 관행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하겠다. [15]

한편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루어질 때 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현재 정전상태로 법적으로 전시의 연장상태이며 공고한 평화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남북한의 공통된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16]

정전협정으로 사실상 적대행위가 중지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전쟁종료의 일반적 원칙은 평화조약 체결이다. 일반적으로 휴전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의미에서도 전쟁의 종료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제도의 원칙이다.

따라서 서해북방한계선은 일종의 전쟁수역(War Zone)의 경계선으로 1952년 9월 27일에 유엔군 사령관이 선포한 클라크라인(Clark Line)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8]

4. 결론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군과 한국군의 해군 및 공군전력이 북쪽 해상으로 초계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서해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은 한국정전협정에도 명시되지 않았고 쌍방의 합의가 된 적이 없어 비법적인 선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북한은 1973년에 처음으로 서해북방한계선을 무효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으며 1999년에는 서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였다. 서해북방

한계선의 법적 정당성을 뒷받침 위하여 국내학자들의 이론적 근거는 실효성의 원칙, 중간선의 원칙, 국제관습법의 이론, 필수적 사후 조치설 등등의 다양한 이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관행에 대해 국제관습법 이론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해북방한계선은 비록 쌍방 간의 합의는 없더라도 쌍방간 적대중지라는 정전협정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적 조치였다.

또한 한국정전협정 제2조 13항나.목에 의하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道界線) 북서쪽 도서 중 서해 5도는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두고 나머지는 북쪽에 통제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해북방한계선은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통제선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전협정에 의해 적대행위는 정지되었지만 전쟁종료라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해북방한계선은 전쟁수역(War Zone)의 경계선적 성격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와 남북 불가침 분야 부속합의서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서해북방한계선은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설정되기까지는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해북방한계선의 성격은 남북한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 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따라서 서해 북방한계선은 북한 도발에 대한 조기경보와 수도권 방위를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출입량의 약 99% 이상이 해상에 의존하고 있어 서해북방한계선은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서해 해상의 관할권 확대를 통하여 수도권 조기석권이라는 북한의 군사전략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용중,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분석”, 법학논고, 제32집, p. 56 1, 2010.
- [2] 이재민,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의 재검토”, 서울국제법 연구, 통권 28호, p. 53, 2008.
- [3] 김영구, “ 북방한계선과 서해교전 사태에 관련된 당면문제의 국제법적 분석”, Strategy 21, 통권 5호, p. 10, 2002.
- [4] 김영구, “ 북방한계선과 서해교전 사태에 관련된 당면문제의 국제법적 분석”, Strategy 21, 통권 5호, p. 24, 2002.
- [5] 김영구, “ 북방한계선과 서해교전 사태에 관련된 당면문제의 국제법적 분석”, Strategy 21, 통권 5호, p. 11, 2002.
- [6] 박중성, ‘한국의 영해’, 법문사, 1985.
- [7] 제성호, “북방한계선의 법적유효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중앙법학, 제7집 제2호, p. 111, 2005.
- [8] 김명기, “서해 북방한계선의 국제법상 유효성의 근거”, 국제문제, 제30권 8호, p. 20, 1999.
- [9] 제성호, “북방한계선의 법적유효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중앙법학, 제7집 제2호, p 108, 2005.
- [10] 제성호, “북방한계선의 법적유효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중앙법학, 제7집 제 2호, p. 112, 2005.
- [11] 김명기, “서해 북방한계선의 국제법상 유효성의 근거”, 국제문제, 제30권 8호, p. 25, 1999.
- [12] 김영구, “ 북방한계선과 서해교전 사태에 관련된 당면문제의 국제법적 분석”, Strategy 21, 통권 5호, p. 17, 2002.
- [13] 김명기, “서해 북방한계선의 국제법상 유효성의 근거”, 국제문제, 제30권, 8호, p. 26, 1999.
- [14] 김현수, ‘해양법 총론’, 정목출판사, 2010.
- [15] 이장희, “6·29서해교전과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외법논집, 12집, p. 42, 2002.
- [16] 하태영·김용환·이윤철, “서해NLL의 정당성 및 수호방안 연구, 해사법 연구, 25권 2호, p. 46, 2013.
- [17] 제성호, “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과 유효성”, 육군3사관학교 (제9회 충성대 학술세미나), p. 9, 2

004.

- [18] 김정건, “서해5도 주변 수역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 논총, 제33권 2호, p. 139, 1988.

[저자소개]



김 호 춘 (Ho-Chun Kim)

1987년 2월 법학사
 1997년 8월 행정학석사
 2001년 2월 법학박사

email : mckim@pohang.ac.kr

●약력

- 포항대학교 군사과 학과장(법학박사)
- 대한군사교육학회 교육연수부회장(현재)
- 학군제휴협약대학학술분과위원(현재)